

별표 제2호타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5호의2”를 “법 제16조제3항제8호의 2”로 하고, 같은 호 과목(종전의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6호”를 “법 제16조제3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하목(종전의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6조제3항제7호”를 “법 제16조제3항제10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실내공기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법률의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어린이·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며,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 4. 2. 공포, 2020. 4. 3. 및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규모를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보다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의료기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로 정하며,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3059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항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

호”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3항제3호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을 “대규모기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가. 업무 인수인계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100

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기간: 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

제35조제5호나목 중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계고등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9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또는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의4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중 “제53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제29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제28조의4, 제29조, 제33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명하여야”를 “명해야”로 한다.

제95조제2항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3호”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거나 사업장 복직 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9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도 급여 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미 지급된 1개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확대·개선(현행 제29조제1항제3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삭제, 제29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후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나.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제95조제4항 단서 신설)

종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비자발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함.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제95조의2제3항 신설)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에서 100퍼센트(월별 상한액 250만원)로, 4개월째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월별 상한액 150만원)로 인상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059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으로, “이 호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에 따른 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60세”를 “55세”로 한다.

제2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으로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제2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임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과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신용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을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 채권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은 각각”으로 한다.

제37조의2제3호 및 제4호 중 “사무”를 각각 “사무(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사무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노년층 뿐 아니라 소득공백이 발생한 중장년층의 경우도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여 이를 통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